

審 查 報 告 書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1998. 2. 14
-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 다. 回附日字 : 1998. 2. 17
- 라. 上程日字 : 1998. 3. 2

2. 提案說明要指(提案說明: 建設課長 尹炳珪)

가. 提案理由

-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사항과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률용어에 대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제1항의 의거 “기타 잡수입”을 재원으로 하게 되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위반하게 될 우려가 있어 “기타”로 규정함(안 제2조제3조).

-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자체금고에 예치관리토록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령이나 지방재정법령에 적립기금으로 국·공채 또는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제정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토록 규정함(안 제3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 회계 공무원” 을 “회계공무원등” 으로 하고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공무원” 을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으로 규정함(안 제6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0조제3항에 의거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토록 규정함(안 제7조제1항).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指

-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과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위반되는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률 용어에 대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으로서,

- '97. 12월 지방자치법 제155조1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로 부터 개정 권고된 사항으로 본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 상위법에 대한 위반소지를 없애고 기금운용이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指

- 없었음

5. 討 論

- 없었음

6. 少數意見

- 없었음

7.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제안번호	제 199 호
의결년월일	1998. . . (제 회)

서산시제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8. 2. 14.

서산시제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9
----------	-----

제출연월일 : 1998. 2. 14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제안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사항 및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률용어에 대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리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제1항에 의거 “기타 잡수입”을 제원으로 하게 되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위반하게 될 우려가 있어 “기타”로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나.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자체 금고에 예치관리토록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령이나 지방재정법령에 적립기금으로 국·공채 또는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제정범위를 이탈한 것으로 보아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토록 규정함(안 제3조):

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공무원”을 “회계공무원등”으로 하고 “기금운용관, 기금분입운용관,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규정함(안 제6조).

라.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 의거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규정함(안 제7조제1항).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타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대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 운용한다.

③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6조의 제목“(회계공무원)”을“(회계공무원등)”으로 하며, 같은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건설도시국장

2. 기금출납원 : 방재계장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제원으로 조성한다.</p> <p>1. ~ 2. (생략)</p> <p>3. <u>기타 잡수입 등</u></p>	<p>제2조(기금의 조성) -----</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기타</u></p>
<p>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u>시장은 비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설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내지 7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위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u></p>	<p>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매회개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 운용한다.</p> <p>③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p>
<p>제6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분입운용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p> <p>1. 기금운용관 : 부서장</p> <p>2. 기금분입운용관 : 건설과장</p> <p>3. 기금출납공무원 : 방재계장</p> <p>②(생략)</p>	<p>제6조(회계공무원등)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p> <p>1. 기금운용관 : 건설도시국장</p> <p>2. 기금출납원 : 방재계장</p> <p>②(현행과 같음)</p>
<p>제7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개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개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제7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현행과 같음)</p>